

■ 공무원보수규정 [별표 41] <신설 2021. 1. 5.>

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(제70조제2항 관련)

평가등급(지급등급)	지급액
매우우수	성과연봉 기준액의 1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
우수	성과연봉 기준액의 1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
보통	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
미흡 및 매우미흡	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

비고: 성과연봉 기준액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